사업방법서 별지

(미니생활보험)

1. 보험의 종류

특종(상해)/상해

2.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

가.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신체
나. 법률상의 배상책임
다.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이익

3. 보험기간

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

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.

5.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6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나. 판매 형태에 관한 사항

- 보험업법 제83조(모집을 할 수 있는 자)의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『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) 또는 직원』을 판매자로 하고,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)를 통하여 청약(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한합니다) 및 가입하는 경우

다.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운용에 관한 사항
-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.
-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만기는 80세 이하이며, 보험금액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한다.

라. 납입주기 : 일시납

마. 보험가입 제한에 관한 사항
-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

바. "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" 운영에 관한 사항
- 적용근거 :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-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1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- 기타
  1)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2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사. 다음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「미니운전자보험」을 사용할 수 있다.
-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자가용, 동승자 포함) 특별약관
-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
- 벌금 특별약관

아. 다음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「미니레저보험」을 사용할 수 있다.
- 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
- 골절수술비 특별약관
- 화상수술비 특별약관

자. 다음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「미니자전거보험」을 사용할 수 있다.
- 자전거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
-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
-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
-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사망, 동승자 제외) 특별약관
-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중대법규위반(6주이상), 동승자 제외) 특별약관
-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중상해, 동승자 제외) 특별약관

차. 다음의 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「온오프 미니운전자보험」을 사용할 수 있다.
- 온오프 벌금 특별약관(차감형)
- 온오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(차감형)
- 온오프 교통사고처리지원금(자가용, 동승자포함) 특별약관(차감형)

카. 다음의 특별약관을 1개 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「계절맞춤미니보험」을 사용할 수 있다.
- 기후성질환(온열질환)진단비 특별약관
- 기후성질환(한랭질환)진단비 특별약관
- 독액성동물접촉중독진단비 특별약관
- 고압산소요법치료비(급여, 연간1회한) 특별약관

타. 다음의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에 대해서 반복적인 취미활동 또는 동호회 활동 여부가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운영한다.(단,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- 고압산소요법치료비(급여, 연간1회한) 특별약관

파. 다음의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계약에 대하여 상품명 별칭으로 「수도권지하철지연보험」을 사용할 수 있다.
- 수도권 지하철 지연 손해 추가비용 특별약관

하. 다음의 특별약관은 다른 보장내용 없이 단독으로 가입할 수 없다.
- 수도권 지하철 지연 손해 추가비용 특별약관